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튼튼개인MMF1호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운용전문인력 변경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효 력 발 생 일	2023년 03월 31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이승건</u>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<u>홍진선</u>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홍진선</u>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<u>김다은</u>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 - <문구 추가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이승건</u>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홍진선</u>

		* 부책임용전문인력: <u>홍진선</u>	* 부책임용전문인력: <u>김다운</u>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 - <문구 추가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<u>2023.03.31: 운용전문인력 변경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이승건</u> * 부책임용전문인력: <u>홍진선</u>	- 2023.03.14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<u>홍진선</u> * 부책임용전문인력: <u>김다운</u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가. 이익배분 (생략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(<u>생략</u>)--- 나누어집니다. (1) ~ (3) (<u>생략</u>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S-P, C-Pe 및 J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가. 이익배분 (<u>현행과 동일</u>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(<u>생략</u>)--- 나누어집니다. (1) ~ (3) (<u>현행과 동일</u>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S-P, C-Pe 및 J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<삭제>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
	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</p> <p>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신설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</p>	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. <삭제>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u>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u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</p>
--	--	--

		<p>- 세액공제: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	<p>- 세액공제: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 <삭제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가. 요약재무정보 - <항목 추가>	가. 요약재무정보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

<끝>.